

1. 진단명(현재 상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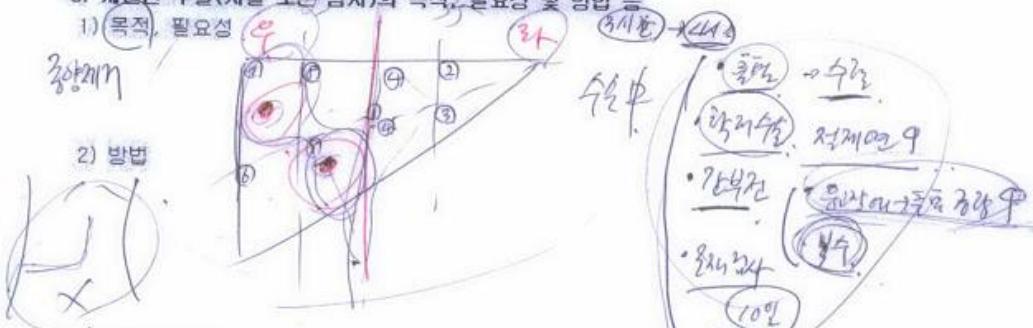
귀의 현재 상태는 [REDACTED] 의 의심이 있습니다.

기왕력	유 / 무 / 미상	알레르기	유 / 무 / 미상
특이체질	유 / 무 / 미상	달뇨병	유 / 무 / 미상
고저혈압	유 / 무 / 미상	출혈소인	유 / 무 / 미상
심장병	유 / 무 / 미상	마약사고	유 / 무 / 미상
· 악으로 인한 사고	유 / 무 / 미상		

2. 치료명(수술명, 시술명, 검사명 등)

치료명(수술명, 시술명, 검사명 등)은 [REDACTED]입니다.

3. 제안된 수술(시술 또는 검사)의 목적, 필요성 및 방법 등



4. 수술(시술 또는 검사) 과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문제(합병증 및 후유증)

1) 일반적인 문제

감염, 출혈, 쇼크, 사망

2) 그 외:

3) 마취 시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

무기폐, 폐렴 등의 호흡기계 부작용.

혈압 저하, 쇼크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, 약물 과민 반응.

간기능 손상, 신기능 부전, 마비, 뇌손상, 사망.

전신마취의 경우 설대, 치아, 눈에 경증의 불편감 내지 손상을 줄 수 있음.

척추나 경막 외 마취 시 두통과 만성적 요통이 유발될 수 있음.

4) 수술과 관련된 문제(수술 중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으며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)

5) 수술 후 중환자실 입실 및 인공호흡기 치료 가능성

[REDACTED]

5. 이 수술(시술 또는 검사)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

[REDACTED]

6.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결과

[REDACTED]

본인은 본인(또는 환자)에 대한 수술(시술 또는 검사)의 목적 및 방법, 예상되는 합병증,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의사로부터 들었으며, 본 수술(시술 또는 검사)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하며 수술(시술 또는 검사)에 협력할 것을 서약하고, 본 동의서 제1조의 '환자의 현재 상태'에 대해 성실히 고지하며 이에 따른 의학적 처리를 주치의 판단에 위임하여 수술(시술 또는 검사)을 하는데 동의합니다.

귀하의 증상과 치료 및 후유증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음

본 동의서 관련 설명문을 받았음

예 아니오
 예 아니오

* 환자가 아닌 보호자(대리인) 등의 사유

환자의 신체·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이 어려움

* 환자 : _____ (서명)

미성년자

* 보호자(대리인) : _____

내용 설명 시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

환자와의 관계

환자 본인이 특정인에게 동의권을 위임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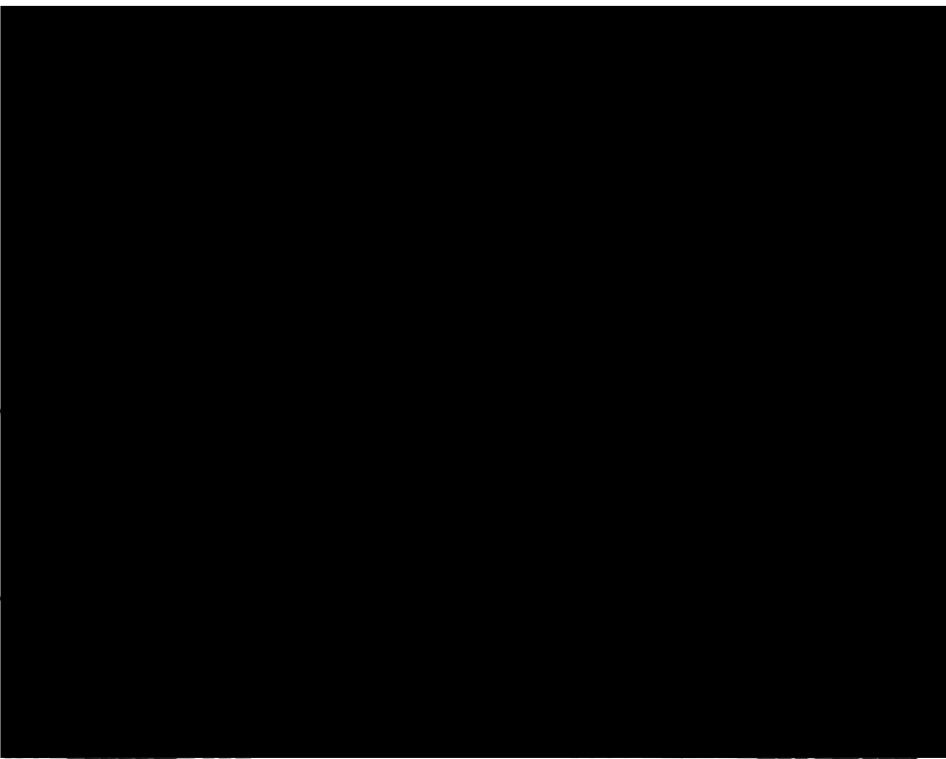
용급상황

담당의사(설명의)

기타 _____

2014년 7월 16일 16시

조선대학교병원장 귀하



본인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해당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은 대한 유전자검사에 기본적인 의지를 통의합니다.

검사대상자

법정대리인

상담자

* 동일한 대상 및 목적을 위한 추가적인 유전자검사에
수 있습니다.

검사대상자

법정대리인

상담자

검사대상자

법정대리인

상담자

(서명 또는 인)

(서명 또는 인)

(서명 또는 인)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(서명 또는 인)

(서명 또는 인)

수신자

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(호서식)]

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

동의서 관리번호

(9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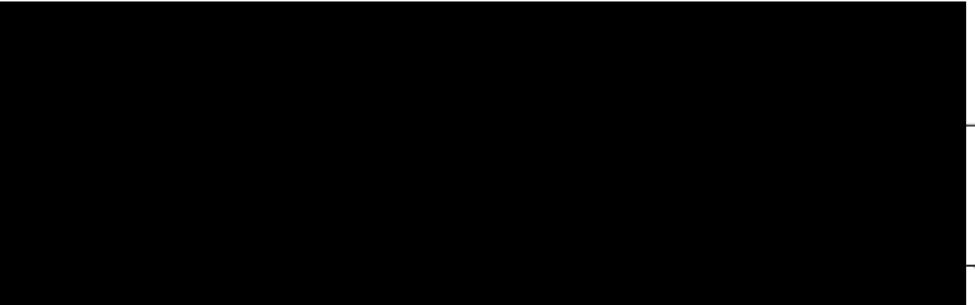
이 동의서는 귀하로부터 수집된 인체유래물등(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를 말합니다)을 귀하의 역학정부 및 일상정보 등과 함께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하며 질병의 진단 및 치료법·개발·개발·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발적인 동의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귀하는 다음의 내용을 읽고 충분한 사항을 상담자에게 듣고 충분히 생각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1.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·세포·혈액·제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인체로부터 분리된 혈청·활액·염색체·DNA·RNA·단백질 등을 말하며, 귀하는 귀하의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채취 방법 및 과정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.
2.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들은 인체유래물은행에 통하여 남부터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되면서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지침에 따라 향후 질병의 진단·예방·치료법 개발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에 보존·관리·연구·분양에 이용될 것이며,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3. 인체유래물은 은행의 장이 이용계약서를 체결하여 국민의 건강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과 「관생명윤리위원회의 제공에 관한 지침」 등에 따라 제공됩니다.
4. 귀하가 이 동의서를 통해 인체유래물등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, 인체유래물은행은 질병의 진단·및 치료방법 개발 등의 연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하의 임상·역학정보 등의 개인정보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.
5.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들은 귀하의 개인식별정보와 분리 부여 될 것이며 인체유래물등과 관련 정보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때에는 귀하의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6. 인체유래물들은 인체유래물은행의 페어·그 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체유래물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하거나 이관하게 됩니다.
7. 연구결과에 따른 새로운 약품이나 진단도구 등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 등에 대해서는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,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한 연구는 학회와 학술지에 연구자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귀하의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.

※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, 작성된 동의서 사본을 1부 받아야 합니다.

‘연구 목적

{인체유래 물은행이, 특히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}



본인은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복지부 인체유래물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인체유래물등의 수집 및 보관, 이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본인의 인체유래물을 기증하는 것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합니다.

·동의서 작성일

2014년 9월 16일

·인체유래물등 기증자

법정대리인

상담자